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(한기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042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0.

발 의 자 : 한기호 · 윤한홍 · 성일종
조배숙 · 김선교 · 강선영
이헌승 · 배준영 · 김은혜
김종양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5월 「국가공무원법」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· 경찰공무원 · 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나, 현행 「군인사법」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상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.

군인은 격오지 근무, 잦은 비상대기와 당직 등 일반 공무원보다 육아 부담이 큰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일 ·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적용은 오히려 가장 늦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, 일 ·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

것임(안 제48조제3항제4호).

법률 제 호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3항제4호 중 “8세”를 “12세”로, “2학년”을 “6학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8조(휴직) ① · ② (생략)	제48조(휴직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임용권자는 장기복무 장교,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와 단기복무 장교 및 단기 복무 부사관이 제4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휴직 을 명할 수 있으며,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호 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 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 4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<u>2학년</u>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 거나 여군이 임신 또는 출산 하게 되어 필요한 경우	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 <u>12세</u> ----- - <u>6학년</u> ------ ----- -----

5. • 6. (생 략)	5. • 6. (현행과 같음)
④ ~ ⑧ (생 략)	④ ~ ⑧ (현행과 같음)